

군산시 옥구·옥녀 햇빛 나눔 집적화단지사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## 군 산 시 장



2021년 11월 15일

군산시 훈령 제 396 호

### 군산시 옥구·옥녀 햇빛 나눔 집적화단지사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군산시(이하 “시” 라고 한다) 옥구·옥녀 햇빛 나눔 집적화단지사업(이하 “사업” 이라 한다) 민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군산시 옥구·옥녀 햇빛 나눔 집적화단지사업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사업 관련 의견 수렴, 협의, 조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지역 상생방안, 환경 보호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시 부시장과 민간위원 등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군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하며, 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위원은 전체위원의 20% 이상으로 구성한다.

- 1. 시 에너지, 산업, 환경,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의 5급 이상 소속 공무원
  - 2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  - 3. 에너지, 갈등조정,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
  - 4. 시민 및 어민단체 대표
  - 5. 그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사퇴하거나,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시 및 시의회, 공공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그밖에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은 회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 등 회의 참여자는 누구든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(정보)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,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협의회는 회의의 공정한 운영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일정, 안건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)**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언행이 의제 이외의 불필요한 발언 및 행동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-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**제10조(간사)** ① 협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.

- ② 간사는 회의소집 통보, 회의 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1조(행·재정적 지원)** 시는 협의회는 운영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시한)** 협의회는 운영시한은 사업의 준공완료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산시 고시 제2021-169호

##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고시

1.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며, 동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군산시청(도시재생과 ☎ 063-454-373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11월 11일

군 산 시 장



### 1. 시행규정(변경)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▶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- ▶ 위 치 : 군산시 중동 237-6번지 일원
  - ▶ 면 적 : 80,698㎡
- 3)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
  - ▶ 주 소 :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, 군산시청)
  - ▶ 성 명 : 군산시장
- 4) 정비사업의 시행년도 및 시행방법
  - ▶ 시행년도 : 2017년 ~ 2022년(변경)
  - ▶ 시행방법 : 현지개량 방식

5) 자금계획

▶ 사업비 : 7,202백만원 (국비 4,162, 도비 892 시비 2,148)

2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변경)

구분	합계	현지개량 용지	정비기반시설용지								비고
			계	도로	주차장	노인 복지시설	복합 커뮤니티센터	소공원	공공 공지		
면적 (㎡)	기정	80,698	59,330	21,368	12,519	1,976	1,580	1,732	2,389	1,172	
	변경	-	증)10	감)10	-	감)10	-	-	-	-	
	변경후	80,698	59,340	21,358	12,519	1,966	1,580	1,732	2,389	1,172	
구성비 (%)	기정	100.0	73.5	26.5	15.5	2.4	2.0	2.1	3.0	1.5	
	변경후	100.0	73.5	26.5	15.5	2.4	2.0	2.1	3.0	1.5	

3.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(변경)

○ 주차장

구분	도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91	주차장	중동 262번지 일원	430	감)10	420	제2017-30호	
신설	92	주차장	중동 270-82번지 일원	1,546	-	1,546	제2017-30호	

○ 노인복지시설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경로당	중동 274-352번지 일원	1,580	-	1,5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복지 및 공동이용공간 마련</li> <li>경로당 설치 부지조성 및 주변지역 주차공간 확보</li> </ul>

○ 복합커뮤니티센터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복합커뮤니티센터	중동 272-13번지 일원	1,732	-	1,73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</li> <li>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</li> <li>중동지구 당산제 진행 및 홍보, 기자재 보관 등의 역할수행 거점공간</li> </ul>

○ 소공원

구분	도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8	서래공원	소공원	중동 266-2번지 일원	637	-	637	제2017-30호	
신설	19	강변공원	소공원	중동 274-9번지 일원	1,752	-	1,752	제2017-30호	

○ 공공공지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34	공공공지	금암동 274-236번지 일원	1,172	-	1,172	제2017-30호	

4.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(변경없음)
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주정착금, 주거 이전비, 이사비등 지급

5. 세입자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 이전비, 이사비등 지급

6. 임대주택 건설계획(변경없음)

- 해당사항 없음

7.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계획(변경없음)

- 본 사업지구는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상 ‘일반상업지역’ 및 ‘준공업지역’ 으로서 건축물의 신축·개량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군산시 도시계획조례」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·지구의 개발밀도 허용범위를 적용함

구 분	계 획 내 용
용 도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군산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른 각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건폐율	• 일반상업지역 : 80% 이하 • 준공업지역 : 60% 이하
용적률	• 일반상업지역 : 1,000% 이하 • 준공업지역 : 300% 이하
높 이 (층수)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군산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

**8.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(변경없음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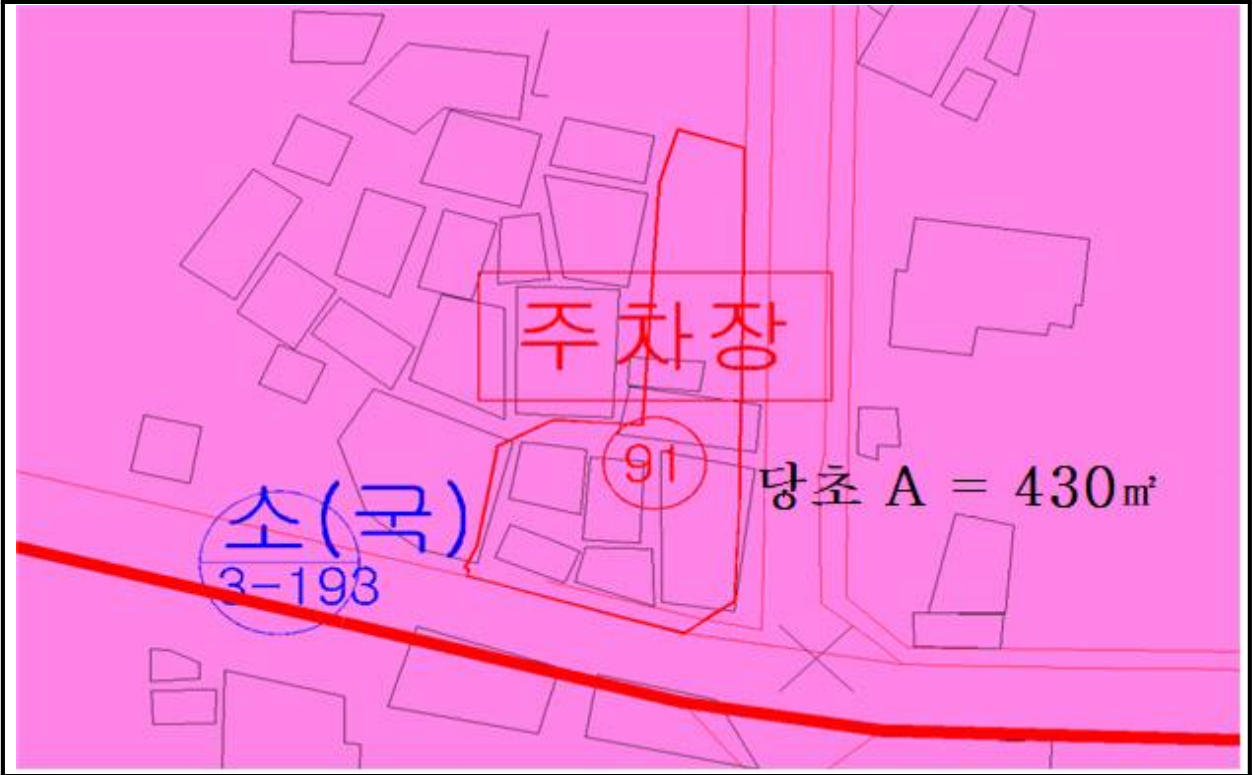
- 지장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, 폐콘크리트, 혼합폐기물, 지정폐기물 등은 성상별, 재활용 가능여부 등으로 분리, 수집 하여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함
-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, 소각, 매립등 군산시 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

**9.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**

구 분	계 획 내 용		
교육환경 현 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1개소(구암초교)가 위치하고 있음</li> </ul>		
교육환경 보호계획	·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		
	구 분	주간(07:00~18:00)	야간(18:00~07:00)
	소음[dB(A)]	65이하	50이하
	진동[dB(V)]	70이하	65이하
	※ 군산시 교육지원청 협의 내용 준수 ·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·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(소음·진동·먼지 등)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·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		

□ 변경도면

(당초)



(변경)



군산시 공고 제2021-2173호

## 군산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59 외1)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

군산시 미룡동 62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59 외1)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·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 산 시 장

2021년 11월 일



1. 열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2. 열람 장소 : 군산시청 도시계획과
3. 사업의 개요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군산시 미룡동 62-6번지 외 29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59 외1)사업
- 2) 명 칭 : 미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- 1) 중로 2-59 : L=214m, B=4.0m, A=720m<sup>2</sup>
- 2) 소로 1-475 : L=63m, B=7.0m, A=504m<sup>2</sup>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1) 사업시행자 주소

-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(중앙동2가)

2) 사업시행자 성명 : (주)제일건설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4. 09. 30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붙임참고

4.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(☎ 063-454-35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○ 중로2-59호선

순번	위치	지번	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본번	부번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미룡동	62	6	대	99.0	99.0	최수웅	군산시 미제길 66-9				
2	미룡동	62	5	대	43.0	43.0	김형석	군산시 용둔길 1-16				
3	미룡동	108	9	대	55.0	55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4	미룡동	108	10	대	209.0	30.0	(주)무궁화신탁, 김혜숙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-102				
5	미룡동	108	11	도	6.0	6.0	김태련	군산시 미룡동 81				
6	미룡동	109	5	전	59.0	59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7	미룡동	109	6	도	8.0	8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8	미룡동	110	3	전	31.0	31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9	미룡동	120	6	전	43.0	43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0	미룡동	120	7	전	35.0	35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
순번	위치	지번	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본번	부번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내용	
11	미룡동	121	5	대	1.0	1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2	미룡동	121	3	대	16.0	16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3	미룡동	121	4	대	19.0	19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4	미룡동	122	4	전	105.0	105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5	미룡동	123	7	전	54.0	54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6	미룡동	123	8	도	13.0	13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7	미룡동	123	9	전	8.0	8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8	미룡동	산242	46	임	18.0	18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19	미룡동	산246	4	임	43.0	43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20	미룡동	106	2	전	15.0	10.0	기획재정부					
21	미룡동	834	70	도	11.0	11.0	국토교통부					
22	미룡동	106	11	도	390.0	1.0	군산시					
23	미룡동	62	3	도	12.0	12.0	군산시					
계	23필지				1,293.0	720.0						

○ 소로3-874호선

순번	위치	지번	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	비고
		본번	부번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내용	
1	미룡동	108	10	대	209.0	179.0	(주)무궁화신탁, 김혜숙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-102				
2	미룡동	126	5	전	32.0	32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3	미룡동	129	1	전	156.0	153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4	미룡동	131	12	전	55.0	55.0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				
5	미룡동	106	2	전	15.0	5.0	기획재정부					
6	미룡동	130	3	대	75.0	22.0	기획재정부					
7	미룡동	130	4	대	18.0	18.0	기획재정부					
8	미룡동	131	5	전	21.0	21.0	기획재정부					
9	미룡동	834	72	도	19.0	19.0	국토교통부					
계	9필지				600.0	504.0						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

○ 종로2-59호선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원래 지번)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고	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, 내역	편입 수량	단위	성명또는명칭	주소		
1		62	대	건물	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 1층 일반음식점 118.08㎡ 사무소 29㎡ 부속건물 화장실 16.2㎡	193.28	㎡	김 형 석	군산시 용둔길 1-16		
2	군산시 미룡동	62-4	대	집합 건물	제1층 101호	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	69.355	㎡	채 옥 순	군산시 공단대로 54, 106동1001호	
					제1층 102호		98.93	㎡	최 수 응	군산시 미제길 66-9	
					제1층 103호		98.93	㎡	송 인 속	군산시 경암2길 17	
					제1층 104호	1층 소매점 264.66㎡ 소매점 88.85㎡	69.355	㎡	(주)제일건설	익산시 익산대로 124	
					제2층 201호	2층 사무소 353.51㎡	168.285	㎡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	
					제2층 202호		168.285	㎡	(주)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	

군산시 공고 제2021-2182호

##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국도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줄음쉼터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10일

군 산 시 장



- 사업명: 국도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줄음쉼터 설치사업
- 사업개요: 국도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줄음쉼터(2개소 상·하행) 설치사업
- 사업위치: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-198번지
- 사업기간: 2021. 12. . ~ 2023. 12. 31.(720일)
- 소요경비: 총사업비 3,336백만원(국비)  
(도급액 2,286백만, 관급 850백만, 폐기물 100백만, 보상비100백만)
- 사업효과: · 국도29호선 국도변 도로시설물을 정비 줄음쉼터 설치사업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함
- 시행청: 전주국토관리사무소

**국도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졸음쉼터 설치사업**

**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 
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**

2021. 10.



**전주국토관리사무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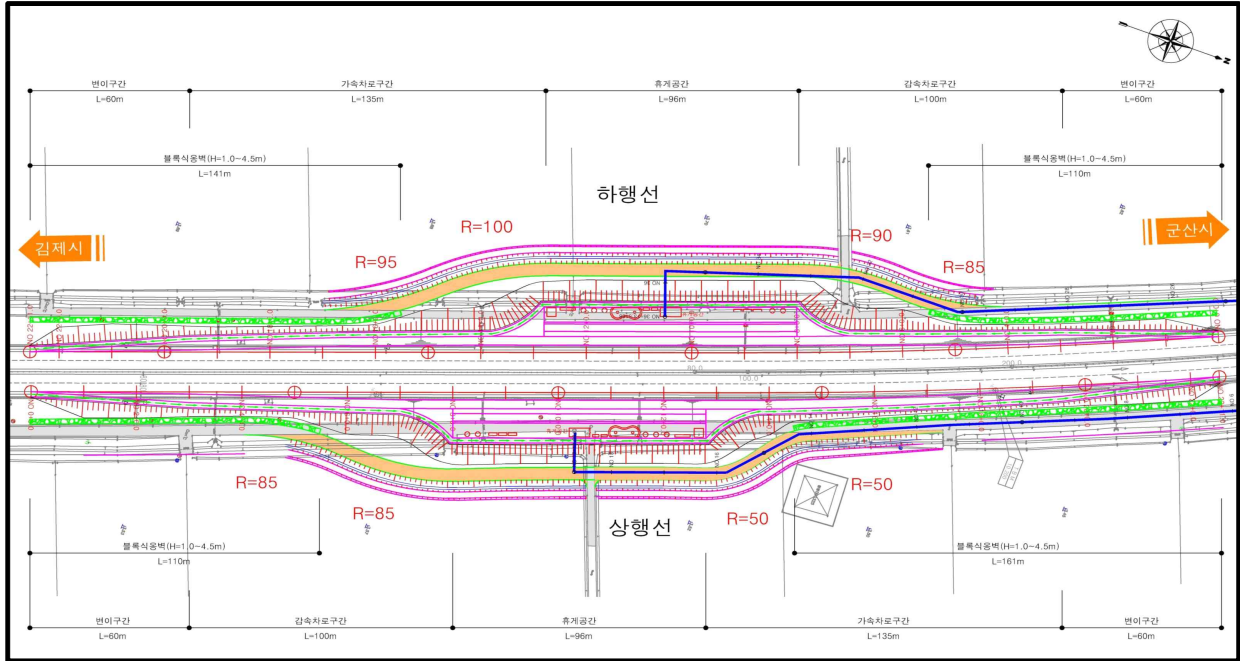
# 목 차

1. 위 치 도
2. 사 업 개 요
3. 도 로 계 획 평 면 도
4. 편 입 토 지 조 서
5. 편 입 용 지 도



### 3. 사업 계획 평면도

#### 계 획 평 면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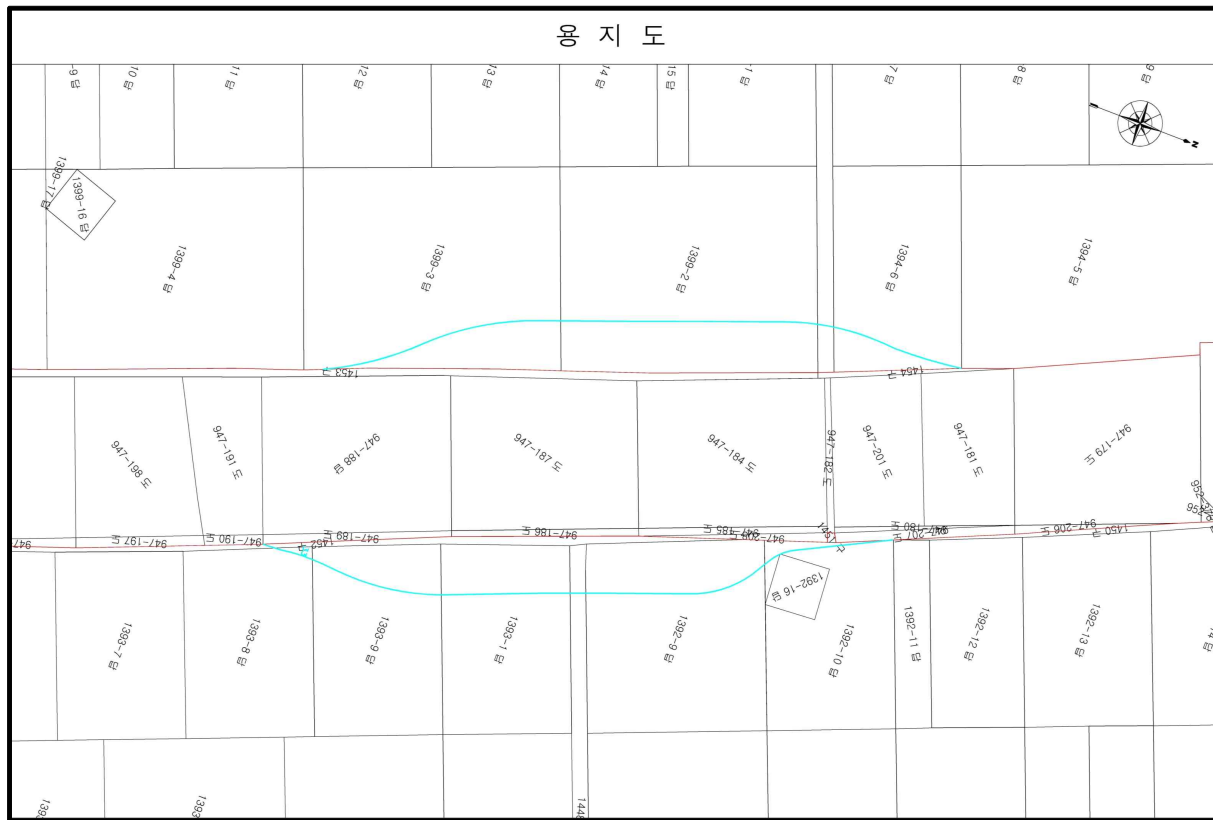


### 4. 편 입 토 지

####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원래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성명또는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대야면 북교리	1392-2	답	5,056.7	1,277.0	조*연					
2	대야면 북교리	1392-10	답	3,194.9	118.0	박*녀					
3	대야면 북교리	1393-1	답	3,607.8	934.0	유*순					
4	대야면 북교리	1393-8	답	3,601.5	33.0	김*순					
5	대야면 북교리	1393-9	답	3,623.9	712.0	유*순					
6	대야면 북교리	1394-6	답	3,874.3	416.0	강*자					
7	대야면 북교리	1399-2	답	7,845.0	1,941.0	조*중					
8	대야면 북교리	1399-3	답	7,675.1	1,000.0	조*중					
9	대야면 북교리	1448	도	1,307.6	114.0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10	대야면 북교리	1451	구	11.2	11.2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11	대야면 북교리	1452	구	734.6	427.0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12	대야면 북교리	1464	도	3,818.8	112.0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
### 5. 편 입 용 지 도


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### 사업인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8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신청인 (사업시행자)	성명 또는 명칭 :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
	주소 :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78

신청내용	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국토 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졸음쉼터 설치사업
	사업예정지 :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-198일원
	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: 국토29호선 도로시설물정비 졸음쉼터 설치사업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.

2021 년 10 월 일

신청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

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서 1부</li> <li>2. 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</li> <li>3. 사업예정지 안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·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</li> <li>4.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</li> <li>5.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,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</li> <li>6.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(협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</li> <li>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(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합니다)을 적은 서류 1부</li> </ol>	수수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
------	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